

##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### 1. 자동신고 수리 대상 및 절차 마련(안 제29조의2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전자시스템 적용 자동 신고수리(자동적 처분)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상 및 절차 마련 필요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(대상)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등(현장·정밀·무작위검사 대상 제외)
  - \* (부칙) 식품첨가물: 공포 후 시행, 농임축수산물: 2023.12.1.시행, 가공식품·건강기능식품 : 2024.6.1. 시행
- (절차) 수입신고 → 자동 서류검사 → 수입신고확인증 발급\*
  - \* 자동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함
- (시스템 검증) 시스템에서 적절하게 검사 및 수리가 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토록 규정
- (공개)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수리가 완료된 수입식품등도 공개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24시간 · 365일 신고 처리로 시간상 제약 극복 및 물류비용 감소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 2. 신고대행업 시설기준 완화(안 [별표 7] 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및 구매대행업은 전자상거래·통신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에서 영업등록을 허용 중이나,
- 신고대행업의 경우,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도록 규정 \* 「건축법」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
-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요청받아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, 타 영업과의 형평성 등 고려하여 개선 필요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하는 신고대행업도 주택용도 건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신고대행업자의 시설기준 완화로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 경감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